

구미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9. 5. .

제 출 자 : 구 미 시 장

1. 제안이유

- 「수도법」 및 「하수도법」 전부개정 공포 시행(2007. 9. 28)으로 수도법에서 관리하는 중수도 업무가 「하수도법」으로 관리·이 관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중수도 관련 업무에 대한 조례를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에 서 정하기 위함이며,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선·정비하려 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변경 및 신설
- 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안 제7조)
 - 중수도사용계획서, 사업개요서, 중수도관련 설계도·평면도
- 중수도의 관리(안 제8조)
 - “중수도사용” 표지 부착
- 중수도의 용도제한(안 제9조)
 - 수세식화장실, 살수, 조경, 세차 및 청소용수로 사용
- 사용량기준 및 검침(안 제10조)
 - 매월 수도미터기에 계량된 량을 사용량으로 기준
 - 상수도사용량 검침 시 중수도사용량 병행 검침

○ 중수도시설의 관리사항 위반(안 제11조)

- 중수도 사용목적 및 수질기준 준수

○ 중수도의 수질검사(안 제12조)

- 주1회 검사 ⇒ PH ,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
- 월1회 검사 ⇒ 생물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

3. 조례 개정안 : 붙임

4. 입법예고 결과 : 의견 없음

5. 관련법령

- 「하수도법」
- 「하수도법 시행령」
- 「하수도법 시행규칙」
- 경상북도 하수도사용조례 준칙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미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부터 제33조 까지를 각각 제13조부터 제39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화장실 용수, 살수 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량 기준 및 검침) ①중수도는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며, 사용량은 수도미터기에 의해 계량된 양을 사용량으로 한다. ②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검침하고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감면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할 때 감면하도록 한다.

제11조(중수도시설의 관리사항 위반) 중수도 설치자는 중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수도의 사용목적 및 수질기준에 위반될 시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감면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수도의 수질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하여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3. 중수도 계량기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지시를 위반할 때에는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제외하며, 고장계량기의 사용량 산출은 최근 4개월 평균 일일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제7조”를 “제13조”로 한다.

제14조(중전의 제8조)제1항 중 “「건축법」 제18조”를 “「건축법」 제22조”로 한다.

제19조(중전의 제13조)제1항 중 “제12조”를 “제18조”로 한다.

제21조(중전의 제15조)제2항 중 “제17조”를 “제23조”로 한다.

제23조(중전의 제17조)제2항제2호 중 “제15조”를 “제21조”로 한다.

제24조(중전의 제18조)제1항 중 “제15조부터 제17조”를 “제21조부터 제23조”로,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을 “제21조제1항제2호나목”으로 한다.

제30조(중전의 제24조)제1항제2호 중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를 “법 제26조”로 한다.

제35조(중전의 제29조)제6호부터 제21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신고 및 관리 등
7.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8.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9. 제16조·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10.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1.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2.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3.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14. 제27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1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감면
16. 제31조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이에 대한 결정
17. 제32조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18. 제33조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 등
19. 제36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20. 제38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21. 법 제8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별표 1 중 “(제10조제2항)”을 “(제16조제2항)”으로 한다.

별표 2 중 “(제10조제4항)”을 “(제16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 3 중 “(제10조제3항)”을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4 중 “(제14조제1항)”을 “(제20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5 중 “(제15조제1항제5호 및 제17조제2항제2호)”를 “(제21조제1항제5호 및 제23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표 6 중 “(제21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7 중 “(제21조제1항)”을 “(제27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 8 중 “(제24조제1항제2호)”을 “(제30조제1항제2호)”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8조제1항)”을 “(제14조제1항)”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3항 중 “제21조”를 “제2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3호서식】

중 수 도 사 용 계 획 서					
1. 건축장소					
2. 설계자 주소·성명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3. 건 축 물 계 획	건축물 명칭		부지면적	m ²	
	주 요 용 도		건축면적	m ²	
	층 수	지상 층 지하 층	연 면 적	m ²	
	구 조		공사종별	신축, 증축, 용도변경	
4.공사예정		년 월 일 ~ 년 월 일			
5.수 도 사용계획	일최대사용량		6.중 수 사용계획	중 수 도 시설용량	
	급수관구경			일최대 사용량	
	년간총사용량			년간중수도 사 용 량	
	기 타			사용용도	
비 고					
구미시장 귀하					
년 월 일					
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 전화					
중수도 사용계획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중 수 도 사 업 개 요 서

구미시장 귀하

년 월 일

사업자 주 소 :

성 명 : (인)전화번호

중수도 사업 개요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1.건축장소					
2.시 공 자	주 소				
	성 명	(인)전화번호			
3.건축물용도			5.연 면 적	m ²	
4.주요용도			6.급수관경	m ²	
7.중수사용량					
8.원 수	종 별	오수,잡배수, 기 타	9.중 수	용 도	
	수 량	오 수		시설용량	m ² /d
		잡배수		시설면적	m ²
		기 타		설치위치	지상층,지하층
10.처리개요 기 술	처리시설의 공종을기입				
비 고					

중 수 도 설 치 확 인 서

년 월 일

구미시장 (인)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년 월 일부로 제출된 중수도 관련 도서의 검토결과,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해서 중수도가 설치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1. 건축물 명칭 및 주소

2. 중수도 사용계획서
승인번호

3. 중수도 사업개요서
승인번호

4. 중수도 시설현황

【별지 제6호서식】

중 수 도 설 치 통 보 서		처리기간	
		즉 시	
①건축주 성명	(전화번호)		
②건축물 주소			
③건축물의 주된 용도		④건축연면적(㎡)	
⑤사용 예정수량 (톤/일)		⑥중수이용 예정 수량 (톤/일)	
⑦중수 처리용량 (톤/일)		⑧중수 처리방법	
⑨설치 완료일		⑩가동 시작일	
⑪중수의 주된 용도			
하수도법 제26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중수도 설치결과를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통보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중수도 설치(착공·준공)신고서										처리기간 20 일						
신 청 인 (시행자)		성 명														
		주 소		구미시		읍·면·동		번지		호 (통 반)						
사 업 내 용																
건 축 물 개 요	건축물 명칭						부 지 면 적									
	주 요 용 도						건 축 면 적									
	층 수						연 면 적									
	구 조						공 사 종 별									
중 수 도	사 업 명 칭		0 0 0 (공장. 아파트) 중수도 설치공사													
	사 업 개 요															
	위 치				시설용량				m³/일		저수조용량				m³	
	사 업 비				일최대사용량				m³		일최대사용량				m³	
	사 업 기 간				년간사용량				m³		일최소생산량				m³	
	사 용 용 도				일평균사용량				m³		일평균생산량				m³	
	중수도 수 질		· 대장균				· 잔류염소				· 탁도					
			· B.O.D				· PH									
상 수 도	소재지															
	성 명				수 조 번 호				업 종							
	계량기구경				수용가번호		동 번 호		분 구		일련번호		지 번			
중 수 계량기구경				중 수 계량기 번호				생산 개시 년 월 일								
「구미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착공시> 첨 부 : 1. 사업계획서 2. 중수도시설 평면 및 구조물도 3. 중수도 시설계통 및 시설내역도 4. 중수도 설계에 따른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서 <준공시> 1. 운영계획서 2. 중수도 생산수질 성적서 3. 준공사진 및 도면 20 년 월 일 건축주 (신청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전화번호 : [- -] [- -] 구 미 시 장 귀하																

신·구조문 대비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생략) 2.제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생략) <u><신설></u>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현행과 같음) ②----- ----- ----- 1.(현행과 같음) 2.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한 경우 3.(현행과 같음)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중수도 사용계획서 2.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시장은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변경 • 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업무관리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④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⑤시장은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 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 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업무관리신설
〈신설〉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화장실 용수, 살수 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 법 개정에 따른 중수도 업무관리신설
〈신설〉	제10조(사용량 기준 및 검침) ① 중수도는 월간 사용량을 기준으로	• 법 개정에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신설〉	하며, 사용량은 수도미터기에 의해 계량된 양을 사용량으로 한다. ②시장은 매월 상수도 사용량 검침일에 중수도 사용량을 병행검침하고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감면은 수도요금 고지서를 발급할 때 감면하도록 한다. 제11조(중수도시설의 관리사항 위반) 중수도 설치자는 중수도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중수도의 사용목적 및 수질기준에 위반될 시에는 즉시 시정조치하고 중수도 사용량에 대한 감면신청을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중수도의 수질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미달된 수량에 대하여는 감면에서 제외한다. 3. 중수도 계량기의 고장 등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 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지시를 위반할 때에는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제외하며, 고장계량기의 사용량 산출은 최근 4개월 평균 일일생산량을 기준으로 한다.	다른 중수도 업무관리신설 • 법 개정 에 따른 중수도 업무관리신설
〈신설〉	제12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	• 법 개정 에 따른 중수도 업무관리신설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7조(시장의 공사시행) (생략) 제8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 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제9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생략) 제10조(공공하수도 사용료) (생략) 제11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생략) 제12조(하수배출량의 산정) (생략) 제13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3조(시장의 공사시행) (현행 제7조와 같음) 제14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 -----제22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 (현행 제8조제2항과 같음) ③ (현행 제8조제3항과 같음) 제15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현행 제9조와 같음) 제16조(공공하수도 사용료)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7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현행 제11조와 같음) 제18조(하수배출량의 산정) (현행 제12조와 같음) 제19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 -----제18조-----	• 건축법 관련조 변경 • 조례 관련 조항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시장이 한다.	----- ----- ----- ----- ----- ----- ----- ----- ----- ----- -----.	
② (생략)	② (현행 제13조제2항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 제13조제3항과 같음)	
제14조(공공하수도 점용료) (생략)	제20조(공공하수도 점용료) (현행 제14조와 같음)	
제15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1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①(현행 제15조제1항과 같음)	
② 제17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징수한 경우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제23조----- ----- ----- ----- ----- ----- ----- -----.	• 조례 관련 조항 변경
제16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생략)	제22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현행 제16조와 같음)	
제17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제23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 (생략)	① (현행 제17조제1항과 같음)	
②1. (생략)	②1.(현행 제17조제2항제1호와 같음)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부	2.-----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담금 단위단가는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별표 5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생략) 제18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 건축의 허가 또는 신고 등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제1호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착공일 기준연도의 단가를 적용하여 부과하되 착공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고자 부과 요청을 하는 경우와 오수량이 10세제곱미터 이하이며 사용승인된 신축건축물을 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를 하여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부과대상이 될 경우는 신청일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부과한다. 1.~4 (생략) ② (생략) 제19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생략) 제20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생략) 제21조(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생략) 제22조(처리장 사용료 납부 등) (생략) 제23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	-----제21조제1항제5호에----- -----. ③ (현행 제17조제3항과 같음) 제2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 ①-----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 -----제21조-----제21조----- -----. 1.~4 (현행 제18조와 같음) ② (현행 제18조제2항과 같음) 제25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통지) (현행 제19조와 같음) 제2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현행 제20조와 같음) 제27조(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현행 제21조와 같음) 제28조(처리장 사용료 납부 등) (현행 제22조와 같음) 제29조(대행업자에 대한 징수교부	• 조례 관련 조항 변경 • 조례 관련 조항 변경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금 교부) (생략)	금 교부) (현행 제23조와 같음)	
제24조(감면 등)	제30조(감면 등)	
① (생략)	① (현행 제24조제1항과 같음)	
1. (생략)	1. (현행 제24조제1항제1호와 같음)	
2. 「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제9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의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2. 법 제26조에 따른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의 감면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법 개정 에 따른 조 항 변경
3. ~ 9. (생략)	3. ~ 9. (현행 제24조와 같음)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 제24조와 같음)	
제25조(이의신청)	제31조(이의신청)	
(생략)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26조(가산금)	제32조(가산금)	
(생략)	(현행 제26조와 같음)	
제27조(자료제출 명령 등)	제33조(자료제출 명령 등)	
(생략)	(현행 제27조와 같음)	
제28조(권리의무의 승계)	제34조(권리의무의 승계)	
(생략)	(현행 제28조와 같음)	
제29조(권한의 위임)	제35조(권한의 위임)	
(생략)	(현행 제29조와 같음)	
1. ~ 5. (생략)	1. ~ 5. (현행 제29조와 같음)	
〈신설〉	6.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수도 신고 및 관리 등	• 개 정 조 향
6. 제7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7. 제13조에 따른 배수설비 공사의 시행	• 개 정 조 향
7. 제8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8. 제14조에 따른 배수설비 준공검사	• 개 정 조 향
8. 제10조·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9. 제16조·제17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	• 개 정 조 향
9. 제12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10. 제18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산정	• 개 정 조 향
10. 제13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11. 제19조에 따른 하수배출량의 조사	• 개 정 조 향
11. 제1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12. 제20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점용료의 징수	• 개 정 조 향
12.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13.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 개 정 조 향

